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0. 7.(수) 14:3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1차, 제4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3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44-131 ~ 13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에 앞서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주문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하이그린파킹 주식회사,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조치와 주차 관리 앱 서비스에서 제3자(타인)의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위 3사와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개선권고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제2항에 대한 시정조치(안)와 주차 관리 앱 서비스에서 차량 실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4사에 대해 개선권고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입니다. 주차 예약, 주차장 찾기, 주차장 이용내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 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조사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4개사였습니다. 그중 위의 3사는 위치정보법 준수사항 위반소지가 있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카카오모빌리티는

제3자에 노출되는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위치정보법 준수사항 위반소지는 없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는 앱 이용자에게 주차장 예약, 이용내역, 결제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 가입 및 이용자의 차량정보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등록차량의 차량번호, 차종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별도로 이용자와 차량 실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하면 차량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차량번호 인식 후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회원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입·출차 정보를 알림형식으로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내역 메뉴에서 주차상태, 입·출차 일시, 총 주차시간, 결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자 노출 관련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와 차량 실소유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사업자의 앱 서비스 회원 가입 후 타인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타인 차량의 입·출차 정보, 주차이용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사전예약 및 자동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자들은 주차장 관리 앱에서 이용자가 '내 주변 주차장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신고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이그린파크(주)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중에 신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공개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2조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파킹클라우드(주)와 하이그린파크(주)은 약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관련해서는 파킹클라우드(주), 하이그린파크(주), 티맵모빌리티(주)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위치정보 관리 등 지침 관련해서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나, 파킹클라우드(주), 하이그린파크(주)은 서비스 개시 이후 관련 지침을 마련한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기적인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킹클라우드(주), 하이그린파크(주) 등은 정기적인 자체 검사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린파크와 파킹클라우드(주)는 그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하단에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고지 및 동의 부분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하이그린파크(주)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런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위반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 다 설명드렸듯이 이런 법조항을 다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4페이지까지는 앞의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의견 부분입니다. 파킹클라

우드㈜, 하이그린파크㈜은 대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15페이지 부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티맵모빌리티㈜는 위치정보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위치기반서비스 부서의 장'을 위치정보관리책임자라고 규정하였다고 저희에게 소명해 왔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검토의견에 보면 물적분할 전인 SKT에서 관리할 때는 위치정보관리지침에 특정 직위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위치기반서비스 부서의 장'이라고만 명시해서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 소명의견은 사업자들이 나와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하이그린파크 주식회사,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앞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자 확인 후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킹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이사) 이상민 님 나오셨습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하이그린파크 본부장 김경태 님 나오셨습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크㈜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티맵모빌리티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이재환 님 나오셨습니까?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조치에 앞서 귀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진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진술인께 모두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모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파킹클라우드 이상민 CTO입니다. 이번 진단을 통해서 저희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신 조사관님들께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조사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는 취지이지요?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하이그린파킹의 김경태 상무라고 합니다. 하이그린파킹 이번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뒤늦게 알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조치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저희 AJ파크에서 하이그린파킹으로 회사가 7월 1일자로 주식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했던 담당자들 자체가 퇴사하고 그중에 공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통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8월 20일에 현재 인수한 회사에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각 계열사가 협심해서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문제없게끔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신 5가지 위반사항 중 현재 3가지 사항은 완료시켜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앱을 개발할 때 외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부분은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D-day는 10월 22일자로 해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의가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늦게 인지한 점은 있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티맵모빌리티 말씀해 주시지요.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안녕하십니까. 티맵모빌리티에서 전략그룹을 맡고 있는 이재환 그룹장입니다. 먼저 저희 티맵주차의 위치정보 관리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티맵모빌리티는 작년 12월 29일에 분사를 했고, 분사 직후인 1월 8일에 위치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해서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담당임원이 위치기반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티맵주차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인 양성우 그룹장을 위치기반관리책임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김용훈 리더를 전사 차원의 개인위치정보총괄 관리책임자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치기반책임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없었다는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에서 검토하면서 저희가 관련한 인사발령기록들을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급하게 분사를 하면서 1월에는 급여를 엑셀로 거의 수기로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무관리시스템이 지난주에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분사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로 소명을 못해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피해는 없었고 저희가 분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정권고로 고려해 주시면 향후에 더욱더 위치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위치정보와 관련해서 자동차를 등록하면 주차하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본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주) CTO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문제가 전화로 뭔가를 할 때는 본인인증이 되는데 자동차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전화로 할 경우 전화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의 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지요?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주) CTO

- 예,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합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현재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car365'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차 인증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데 비용이 차량당 100원 under 정도 드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불하면서 저희 서비스에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앞으로는 자동차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전화로 그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그렇지요.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예, 그것이 적용되면 불가능한데 그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1인으로 나와서 1명의 것만 등록이 가능한 상태라서 본인차량만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는 렌터카일 경우 회사차량으로 계속 등록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에 대해 서약서를 쓰고 저희가 그것을 받은 후 그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AJ파크에서 하이그린파크으로 회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몰랐다는 것이지요?

○ 김경태 하이그린파크㈜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예. 하이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1일자로 회사가 주식 매매 계약이 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M&A가 돼서 다른 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방통위 관련된 부분을 그전부터 앱은 가지고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방통위를 통해 연락받은 것이 2월 말 정도에 연락을 받아서 일부는 그전에 AJ파크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7월 1일자로 주식양수도가 되면서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담당했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이그린파크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에서 인지한 것은 8월 20일 정도에 인지해서 부리나케 급하게 준비하면서 내용도 만들고 또 조치사항도 취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22일까지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서비스 개시일과 함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뒀지요?
- 한상혁 위원장
 - 티맵입니다.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티맵모빌리티에서 나왔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개시...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의견진술자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보고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했다고 나오는데...
- 김 현 부위원장
 -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카카오모빌리티는 안 나왔습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러면 파킹클라우드에 질문하면 보니까 3년간 위치관리정보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비스 시작은 2015년, 2016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한 것은 2년 전이라 그 시점 즈음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에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예, 저희가 많이 무지해서...

○ 김창룡 상임위원

- 본인이 오기 전에 이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때도 하지 않고 내가 와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제가 온 후에 지정하게 된 것이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보고서상으로는 '19년 8월인지, '20년 8월인지...

○ 김창룡 상임위원

- 보고서에는 2018년 1월 파킹클라우드….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주) CTO

- 그때는 제 전임자 때….

○ 김창룡 상임위원

- 전임자 때 한 것입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주) CTO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하이그린파킹은 4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예, 맞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왜 그렇게 됐지요?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일단 그 전에는 주차사업이 사실상 모바일 기반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모바일 앱을 출시하면서 주차장을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상 큰 스테디 없이 외주업체를 써서 앱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고, 그런 것들이 외주처리를 해서 앱만 보유하고 있었지 그것이 위치정보법에 저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 또는 거기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래서 방통위에서 조사 나가니까 그때 지정하기로….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7월 22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조직도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티맵모빌리티도 조사를 시작하니까 그때 지정하게 된 것은 똑같은 이유입니까?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월에 티맵주차에 대해 양성우 그룹장을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했으나 당시에 분사한 직후라서 체계적인 인사기록시스템에 남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정되었으나 저희가 방통위에서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못 드린 점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실질적으로는 양성우 그룹장을 지정해서 위치정보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1월 초반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는 저희가 분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문서화하거나 시스템화하기가 어려워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상 이렇게 지정해 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예. 그리고 실제로 지정했지만 워낙 분사 초기에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로 남기지 못한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모빌리티 이야기를 한 것은 같은 위치정보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업무개시일과 함께 다 지정해서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왜 타 매체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가입회원과 차량의 실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를 수 있더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상 민간업체 입장에서 차량에 대한 번호를 등록할 때 그것이 실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무지하기는 하지만 차량정보가 돌아다니는 차이도 또 그런 부분이 크게 법에 위촉된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등록할 때 실소유자와 차량번호가 매칭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사실상 애매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처음부터 다를 수 있다는 가능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중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그것을 확인할 방법 자체도 마땅한 것이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회사 측에서 파악한 피해사례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크㈜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방통위에서 조사 나와서 했던 것을 보면 민원인이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집어넣으면 그 차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어디어디에 사용했고 요금이 얼마 나왔다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량소유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 차량번호를 넣어서 조회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아까 파킹클라우드 측에서 이야기하셨는데….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킹패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거기에 차번호를 등록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저희 주차장에서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등록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입·출차 이력을 볼 수 있는 기능은 파킹패스를 쓰는 고객들이 만약에 할인을 내려야 할 때 거기서 선택해서 할인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기능을 넣었고, 저희는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에 과거의 차량 입·출차 이력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을 등록한 시점부터 그 차가 저희 주차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력을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방통위 조사를 처음에 받자마자 바로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메뉴까지 막았습니다. 메뉴까지 막아놓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car365를 통해 본인 인증된 차량 아니면 회사에서 인증해서 본인이 OK한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경태 하이그린파크㈜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그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4일에 방통위에서 연락을 받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안에 대한 부분을 26일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막아서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파킹클라우드 측에서 이야기한 조치와 다른 2사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크㈜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예, 바로 막았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지금 보니까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근무한 지 2년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하이그린파크 김경태 진술자님은 '08년도부터 일을 하신 것으로 경력상 되어 있고 티맵모빌리티 이재환님은 부사장으로 책임자인데 어쨌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했는데 세 분 다 공히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이지요?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주) CTO

- 저희 회사는 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회사이고 앱은 좀 더 편의성을 위해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차장을 확충하는데만 집중하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법무팀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뒤늦게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 처럼 위치정보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었으면 사전에 좀 더 빠르게 조치했을 텐데 저희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하이그린파크도 마찬가지로입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크(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예, 맞습니다. 제가 인수되기 전 AJ파크에서도 근무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담당했던 업무 분야는 아닙니다. 대신 오늘 배석을 못한 것이 퇴사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했던 분들은 지금 회사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공부하고 오늘 참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당시 파킹클라우드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도 주차장 운영을 해서 먹고사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상 앱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강했고, 또 영업적으로 이 앱이 있으면 홍보하는 효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다거나 인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분석하고 회사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최종한 말씀이지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회사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티맵모빌리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습니까?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양성우 그룹장을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에 분사하면서 1월 분사 직후 당시 내부 사정이 열악했고 시스템이 미비해서 이러한 인사기록을 증빙으로 보관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일단 지금 위치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의견진술을 들었는데 대부분 몰랐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책임자가 있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잘 들었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술을 들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도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의 근본적인 출발은 개인의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처분의 원인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이 부분을 개선권고한다고 할 때 현재 기술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 CTO

-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car365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중고차로 팔아버렸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전 차량을 판 사람은 잊고 있다가 새로운 차량 주인이 이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변경해 주는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 자체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인증까지 한 후 이 차량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거론된 모든 업체들은 그것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앞에서 말씀을 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들,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들은 정부3.0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차, 장애인차, 또 기타 감면을 받아야 할 차량들을 다 매칭시켜서 그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서 감면처리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사실상 그 데이터를 주지도 않지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들을 공개해서 받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공개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소유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공공데이터의 일부라도 개방해 주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지금 공영주차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그 데이터를 공개해 주지 않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티맵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저희도 서비스 초기인 '19년도에 티맵주차를 론칭했는데 그때 벤치마킹한 것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서비스하고 있는 파킹클라우드나 하이그린파킹이나 카카오모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 최대한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이런 정보보안 이슈가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차량정보의 본인인증 관련해서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민간사업자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티맵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데 인사발령 낸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예, 맞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까 순서와 동일하게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민 파킹클라우드(주) CTO**

-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위치정보 기록 관련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앱에서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지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리에만 있다가 데이터가 바로 날아가고 DB에 저장하거나 어디에 저장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위치검색에 대한 것을 남겨 놓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그것을 저장해서 뭔가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서관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고 회사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태 하이그린파킹(주) 운영사업2본부 총괄본부장**

- 하이그린과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시기적으로 특수성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2월에 시작된 것을 아직도 종결시키지 못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일부러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담당자의 부재 또는 인지하지 못한 경영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지적받은 5가지 중 3가지는 완료가 되었고 2가지는 10월 22일까지 완료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이재환 티맵모빌리티(주) 전략그룹 그룹장(부사장)**

- 티맵모빌리티의 이재환입니다. 다시 한번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연초에 분사가 되면서 관련 시스템 미비로 체계적인 증빙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견진술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시정조치(안)와 관련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정지 또는 이를 대신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킹클라우드(주), 하이그린과킹(주), 티맵모빌리티(주)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업정지를 명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업정지(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정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일부 정지명령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법령이 정한 가중·감경 없이 기준 정지기간을 적용하는 안이고, <제2안>에 대해서는 티맵모빌리티(주)의 경우 사업의 분사 등으로 인사시스템 미비 등을 고려하여 50% 감경(안), 파킹클라우드(주)의 경우는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및 일부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지기간 50% 감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연도 직전 3년의 연평균 매출액을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그린과킹(주), 티맵모빌리티(주)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안)을 <1안>과 <2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최종 사업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1안>, <2안>

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사업정지 <1안>을 선택하고 과징금을 하게 된다면 과징금도 <1안>이 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 건은 파킹클라우드(주)와 하이그린파킹(주) 2개 사업자인데 이용약관 공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박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안>은 특별한 가중·감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안과 <2>안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전에 위반행위가 시정된 부분에 대해 파킹클라우드(주)는 50% 감경(안)을 <1안>, <2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칙규정이 있습니다. 이 별칙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1안>, <2안>, <3안>을 마련해서 전체 하는 안, 일부 사업자만 하는 안 그리고 최초 행위이거나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의뢰하지 않는 안 이렇게 3개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권고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주차관리 앱 서비스 회원 가입 후 타인의 차량번호만 등록하면 타인의 입·출자 정보 및 주차이용내역이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차량 실소유자 또는 실사용자 확인 강화, 관련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개선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4개사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대표자를 비롯한 위치정보관리책임자·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하여 위치정보보호 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시정조치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 사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지만 가장 핵심은 차량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차량등록을 해서 제3자가 차량소유자의 차량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지 미처 몰랐고 앞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 개선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발언이 공공의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도 공유하면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 사업자들의 이야기니까 사무처가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현재 사업자들이 영세하고 작다고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고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리에 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내용 중 시정조치(안) 사업의 정지 또는 이를 대신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정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정지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 시장경쟁 및 해당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는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과징금 부과(안) 중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한 시정노력 등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일부 금액을 감경한 <제2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는 기준금액 300만 원에서 사실조사 전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한 <제2안>이 적절합니다. 끝으로 수사기관 이첩과 관련해서 최초 위반행위인 점, 개선노력 등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

이첩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김효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사기관 이첩 문제는 향후 어떤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인지 여기도 나름의 기준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먼저 사무처 직원들 코로나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해당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본적인 법적 의무 과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조치로서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중 <2안>, 과태료 중 <2안> 그리고 수사기관 이첩은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정조치가 사업자 들의 고객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법 관련 서비스, 특히 주차관리서비스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금 전 사업자들이 건의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들을 들어보고 저희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잘 봐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봐서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세 분의 상임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서 진술하신 분들의 현장에서 어려움,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조치하는 데 고생 많으셨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는 한 가지 사무처에 여쭙보고 싶은 것이 4페이지 관련법령을 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붙임 2> 관련법령에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것은 적용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으면 앞 본문 기준에 따르면 3개월짜리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런데 2개월, 2개월로 동일하면 2개 합산해서 4개월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1개월짜리 하나, 3개월짜리 하나가 있으면 3개월짜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2개월짜리가 2개이면 4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저희는 두 번째 '다만' 기준을 적용해서 2개의 정지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니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각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에...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약간 문구가 모순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위반행위가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으면 둘을 합쳐서 3개월짜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3개월을 정지를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2개월, 2개월짜리 2개가 있으면 합산하면 4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중간에 3개월짜리가 있는 것이 더 적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규정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기간과 그에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양형·양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서로 간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에 무겁게 적용되면 안 되니까 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한번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의결은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21-44-134~13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입니다. 위치정보법 합병 인가 의무를 위반한 에이디티캡스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600만원 그리고 분할 인가 의무를 위반한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600만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배경입니다. (주)에이디티캡스, 현대오토에버(주), 두산산업차량(주)은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합병·분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를 받지 않고 상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절차를 완료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 및 조사결과 사업자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합병·분할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에이디티캡스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상법상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대오토에버(주)와 두산산업차량(주)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결국 인가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에이디티캡스는 위치정보법 준수를 위해 법인 합병 1개월 전에 합병을 신청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사전에 방통위에 승인을 얻지 않고 한 부분을 요청하였고, 현대오토에버(주)와 두산산업차량(주)은 이 부분에 대해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진행이 늦었다는 소명의견을 냈습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주)에이디티캡스 같은 경우 합병 한 달 전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서 과태료 2분의 1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과태료(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주)에이디티캡스의 경우 상법상 법인 합병 한 달 전에 인가 신청하였습니다. 적어도 관련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할 경우 우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은 사업자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피심인 3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시정조치인 과태료 처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걱정은 나름 위치정보사업자 가운데 대기업에 속한 곳도 이렇게 법적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중소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런 위반사례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오늘처럼 엄격한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충분히 법을 숙지하고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홍보에 우리 위원회가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사무처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44-137)

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44-138)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은 2건의 논의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보고받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일부개정안을 5월 26일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지원금 확대에 관한 의견 4건이 접수되어 이통3사 및 유통협회와 의견을 추가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 지원금 확대 관련입니다. 유통점의 추가 지급 여력과 이용자의 체감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말기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급가산금 요율 개정 및 범위 명확화입니다. 환급가산금 지급 요율을 연 6% 고정금리에서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이통3사 및 유통협회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추가 지원금만큼 대형 판매점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유통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장려금 차별이 확대되어 이용자 차별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전체 혜택이 증대되는 점과 일부 유통망은 법정 한도 15%를 초과해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는 많은 유통점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변동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재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통3사 및 유통협회 의견을 추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가능한 날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하고 공시 변경일 지정을 통해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결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이통3사와 유통협회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였지만 KT와 유통협회는 개정 시 공시일을 월요일, 목요일로 했던 것을 화요일, 금요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통사 직원의 복지 감소 및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하여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공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보 게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불법적으로 15% 이상의 불법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을 양성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의 의견과 같이 자칫 대형·중소 유통점 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이용자 장려금 차별 확대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제도개선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서 제도개선 후에도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윤응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번 단말기유통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지원금이 감소하고 또 신속한 지원금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다만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통통신3사와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윤응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입법예고 시 들어온 의견 가운데 이통사와 유통점에서는 추가 지원금 확대 등의 개정안이 장려금 차별 확대로 이어져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통사와 일부 유통점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을 고착화시키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 참여의 확대보다는 사업자 간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 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 증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고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같은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활한 논의와 신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근거와 대응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항상 단통법 관련해서는 상반된 요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와 또 한쪽에서는 경쟁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런 상반된 요구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 것인지가 우리 위원회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과정 중에서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고 이후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1년도 지상파·중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21년도 지상파·중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지상파·중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는 지상파·중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올 4월에 지상파와 중편PP는 협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홈쇼핑에는 편성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서 8월까지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연계편성 현황은 분석 대상으로는 지상파 4개사(5개 채널), 중편PP 4개사, 홈쇼핑채널 12개사(17개 채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EBS1과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이 확대되었습니다. 분석대상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분석방법은 지상파·중편PP의 건강정보프로그램 방송 시작 전부터 방송 사이, 방송 종료 후 1시간 이내 홈쇼핑에서 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입니다. 종합적으로 지상파·중편PP 건강정보프로그램

편성기준으로 지상파 2개 채널과 종편PP 4개 채널 45개 프로그램에서 520회, 또 홈쇼핑채널은 TV홈쇼핑 7개 채널과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편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KBS1·2 TV와 EBS는 연계 편성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상파·종편PP사의 건강정보프로그램 편성이 작년에는 3개월 분석을 한 것입니다. 3개월 24개에서 올해는 45개로 편성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채널도 인접한 시간대에 관련 상품판매 방송이 작년에 3개월 451회에서 올해는 1개월간 756회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PP 사업자 기준 분석입니다. 지상파는 총 10개 프로그램이 139회 연계편성되었으며, MBC가 3개 프로그램 80회, SBS가 7개 프로그램 59회 편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SBS가 가장 많았고 횟수로는 MBC가 더 많았습니다. 종편PP 기준입니다. 종편PP는 총 35개 프로그램이 381회 연계편성되었으며, TV조선이 14개 프로그램 139회, MBN이 8개 프로그램 108회, 채널A가 5개 프로그램 70회, JTBC가 8개 프로그램 64회 편성되어서 TV조선이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최다프로그램으로 지상파에서는 MBC의 '기분 좋은 날'이 48회, SBS의 '좋은 아침'이 24회, 종편PP는 TV조선 '굿모닝 정보세상'이 27회, MBN의 '특집다큐 H'가 26회 등으로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재방송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연계편성된 프로그램 총 520회 중 본방송이 290회, 재방송이 230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계편성된 요일과 시간대를 분석해 봤을 때 일요일이 18.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편성시간대는 오전 6시~10시 사이, 최빈도 시간대는 6시~7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연계편성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편성된 지상파·종편PP 1개 프로그램별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은 1건에서 최대 7건까지 연계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홈쇼핑 사업자를 기준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TV홈쇼핑은 7개 채널에서 총 505회 연계편성되었으며, NS홈쇼핑이 110회, CJ오쇼핑이 103회, GS홈쇼핑이 81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홈쇼핑입니다. 데이터홈쇼핑은 올해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10개 채널에서 총 251회 연계편성되었으며, 겸업 홈쇼핑 5개 채널에서 82회, 전용 홈쇼핑 5개 채널에서 169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계편성 유형을 살펴보면 총 756회 중 지상파·종편PP 건강정보프로그램보다 먼저 시작한 유형이 105회, 방송 중에 시작한 유형이 540회, 방송 종료 후 시작한 유형이 111회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계편성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봤을 때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총 53개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유산균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다음은 콜라겐, 단백질, 오메가 순이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연계편성과 관련된 자막고지 현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때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편성 520회 중에서 프로그램에서 소개식품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협찬주가 협찬한 417회에 대해서 자막고지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홈쇼핑방송에 연계편성되었으나, 당회차 건강프로그램의 협찬주 제작지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103회에 대해서는 협찬사실을 미고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종편PP 대부분이 협찬사실 자막고지 문구에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식품명을 명시해서 '본 프로그램의 콜라겐 관련 내용은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지했습니다만 SBS의 경우에는 소개식품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 협찬사실만을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 방안입니다. 연계편성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협찬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협찬주 상품·용역에 관한 기능·효과·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의 조속적인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필수적 협찬고지 형식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협찬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보다 협찬사실고지 형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 시 후속조치로 필수적 협찬고지의 구체적인 고지 노출 시점, 시간·횟수 등 강화된 고지 형식을 고시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효과가 노출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협찬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고지시간도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 오인 및 피해 방지 등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편성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협찬고지 위반, 소비자 오인, 광고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방심위와 협조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종편 PP와 홈쇼핑채널 간 연계편성 정기 실태점검 시 사업자 간 연계편성 및 판매상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TV조선과 관련해서 미고지했다고 되어 있지요?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현재 연계편성과 관련해서 협찬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편 재승인 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직접적인 효과·효능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그 사실이 협찬주와 협찬품이 다르다면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런데 일치하는 경우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미고지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렇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 보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상파·중편PP 사업자와 홈쇼핑 간 연계편성 문제는 이미 방통위 4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논의했는데 지금 수치를 보니까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18년 지상파·중편 연계횟수가 한 달 동안 110회에서 2021년 3년 사이 같은 기간에 520회로 5배가량 늘어났고 홈쇼핑 연계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보고처럼 114회에서 무려 756회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방송사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연계편성을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해 왔고, 그 결과 시청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오해와 과신 또 홍보를 극대화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계편성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불만과 또 불신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먼저 한계점은 현행법령으로는 편성금지와 같은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계편성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국민적 불만과 피해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하루빨리 이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본 위원회가 시청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TV조선이 연계편성 103건에 대해 협찬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협찬고지 의무는 협찬사를 밝힘으로써 시청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관련 상품정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면 이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회가 다른 분야에서는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안이 심각하고 악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편성이 조직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 이면에는 연계편성 전문 에이전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음성적이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앞으로 방송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계편성 관련 전문 에이전시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파악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사와 에이전시 홈쇼핑을 연결하는 에이전시의 실태파악 후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본 위원회가 방송사와 에이전시 홈쇼핑의 장삿속이 시청자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고 또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관련법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금 사무처 보고에 보면 방송사들을 상대로 연계편성 문제를 매년 방송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방송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평가야말로 이런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데 아주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공적 매체인 만큼 수익성에 함몰되지 않도록 연계편성 관련 고시 수준의 독립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방송사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구해석에 얽매여서 협찬고지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풍토를 만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뜻이 있어야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시장의 무질서, 연계편성의 상업화, 협찬고지의 무력화 이런 것이 더 심화될 것 같아 우려가 앞서는데 본 위원회가 연계편성, 협찬고지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접수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연계편성은 시청자가 상품의 효능을 오인하거나 과신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하게 말하자면 최근 유튜브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뒷광고의 TV 방송판이며, 결국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법적 공백이 있습니다. 조속히 관련 법안의 통과 등 보고된 안건 내에 조치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에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자정노력을 통해 연계편성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접수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일단 보고내용을 보면 지상파의 경우 이 기간 안에 KBS1·2와 EBS는 홈쇼핑채널 상품판매 방송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지요?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김 현 부위원장

- 그런데 그 기간 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것이지요?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한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연계편성에 대한 현황점검이 지금 보고된 만큼 제한적인 내용으로 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요인을 근절할 수 없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재의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있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오늘 보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방통위에서 보고할 때 이 협찬의 형태가 세월이 지날수록 노골적이고 보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그래야만 자정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협찬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공영방송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이 지양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편에서 건강정보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 시청시간대에 주로 이용되고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할 때 보도자료를 낼 때 견제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방통위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면밀하게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협조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와의 협업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검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보고될 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위 건강프로그램과 건강식품이 주로 노년층과 젊은층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 있게 접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협찬에 의해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 접수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송광고와 관련한 낡은 규제들을 완화했고,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 현재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에서 핵심은 바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실질적인 광고방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편성이야말로 저희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현혹시키는 이런 형태의 방송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결의안이 지난달 9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방통위의 해임결의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통위가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저희가 해임건의를 의결했고….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지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통위는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강규형 前 이사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저희 방통위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한국방송공사 강규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사유는 강 이사가 자신에게 지급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2015년 9월 선임된 강 이사가 2년여 동안 320만원,

월 약 13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해임사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017년 12월 28일 전자결재로 강 이사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강 이사 해임에 이은 보궐이사 선임으로 당시 여권 성향 5명, 야권 성향 6명으로 되어 있던 KBS 이사회 구조는 6:5로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대영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인호 이사장은 상중이어서 불참했고, 다음 날 당시 여권 이사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퇴하였습니다. 지금의 KBS 지배구조는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강규형 이사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방통위가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많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020년 6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KBS 이사 모두에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되었고 원고의 부당집행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지난 9월 9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강 이사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방통위의 해임결정은 방통위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 해임사유로 제시한 업무용카드의 사적용도 사용액의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도 당시 KBS의 모든 이사에게서 비슷한 점이 지적되었는데 유독 강규형 이사만 해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런 일로 문제 삼은 일도 없었다는 강 이사 쪽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임사유가 자체가 해임사유로 되기에는 너무나 영성하고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구성된 이사 구조를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KBS 사장을 합법의 모양을 갖추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KBS 노조는 강 이사의 근무지인 명지대학교는 물론 사생활 공간인 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집단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신적인 테러이고 린치입니다. 결국 폭력이 법을 이긴 것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냉철한 법해석과 엄정한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폭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방통위의 잘못이 크고 엄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이사는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기는 이미 끝나 복직을 할 수 없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행정청의 결정으로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에 심각한 해를 입었지만 정작 그런 결정을 한 책임자들은 이미 임기를 마치고 공직을 떠났습니다. 개인 간의 일이라면 원인 제공자가 사망하거나 없어지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정부와 개인의 일이라면 그런 결정을 한 공직자들이 임기를 마치고 행정부를 떠났다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행위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은 영속적으로 남는 것이고 행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걸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를 전제로 저는 다음의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강규형 이사 해임결의가 방통위에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되었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강규형 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방통위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해임결의안을 낸 것이 재량권 남용

이라는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감한 것이, KBS 국감이 12일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통위 입장이 무엇이나는 것이 제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의사 진행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논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견과 내용적으로 보면 감사원이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했고 사후조치를 요구해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15시 03분 방송통신위원회 4차 회의실에서 이효성 위원장과 허 욱 부위원장과 김석진 상임위원과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네 분이 상당 시간의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고, 그 의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방통위에 KBS 이사의 해임건의 권한이 있고 해임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해임사유도 인정하나 그것이 해임될 정도에 이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효재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혹여 많은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사무처는 강규형 前 이사의 해임처분에 대한 사무처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당시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한 분만 이석하고 4명의 찬성에 의해 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무처 직원도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중에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무처의 절차 역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면 김효재 위원님의 입장에 대해 제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7년 12월 27일은 한국방송사,

○ 김 현 부위원장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안형환 상임위원

- 제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지요.

○ 한상혁 위원장

- 말씀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7년 12월 27일은 한국방송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KBS 이사였던 강규형 교수에 대해 해임건의를 의결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 해임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강규형 前 KBS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최종결정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해임의 단초가 된 감사원의 형평성이 전혀 없는 치졸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고 또한 치졸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해임사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덧붙여 사퇴요구 시 조롱논란, 제보자에 대한 위협·폭언 등으로 인한 명예실추,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건된 점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 신뢰 저하라는 별건의 치졸하고 억지성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폭행 논란은 당시 KBS의 일부 노조원들이 강규형 이사를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서 근무하는 대학교 등을 찾아와 폭력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강 前 이사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 쌍방폭행으로 몰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임사유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결은 강 前 이사는 무죄, 상대방은 유죄였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해임한 셈이 됐습니다. 강규형 前 이사는 이러한 일련의 송사과정에서 심신은 황폐해졌고 삶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한 사람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언론개혁, 방송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만의 명분의 실체는 KBS 장악, 방송장악이라는 권리구제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회 곳곳에서 역사 바로 잡기가 광풍처럼 행해졌습니다. 강규형 前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 결정이야말로 역사 바로 잡기의 중요한 대상일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커다란 오점인 이 문제에 대해 반성과 함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렇지요?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것이 방송의 속성이예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강규형 前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 의결을 앞두고 열린 청문회장에서 청문주재자가 한 말입니다. 해임 당시에 강압적이고 몰이성적인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에서 우리 방송사에서 이 같은 반역사적인 행태와 인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역사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지, 갑자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형 이사가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KBS 이사직에서 쫓겨날 때 방통위는 무슨 역할을 했던가? 보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신태섭 동의대교수를 이사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먼저 교수직부터 박탈시키고 그 이후 이사직에서 쫓아내고 KBS를 장악하는데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총동원돼서 난리를 쳤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심에서 배임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1심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에 가서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해임 역시 처분무효소송 결과 승소했지만 이미 세월이 흘러서 복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현재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방통위가 사과해야 한다, 5기가 왜 나서서 사과해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마 사무처에서 그 당시 직원들도 근무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 하나만 끄집어내서 할 것이 아니라 한다면 다 끄집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방통위의 결정이 법원에 가서 인용되기도 하고 또는 인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방통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방통위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결론이고 임면권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방통위가 책임지라면 1, 2, 3, 4기에 결정된 내용 중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그 위에 5기가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5기 시작을 4, 5기를 같이 한 분도 있고 5기에서 시작된 분은 아마 김효재 위원님과 저밖에 없지만, 저희가 5기 방통위 과제를 할 때 적어도 4기에서 결정된 것은 존중하고 그 위에서 5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종편에 대한 재승인의 문제라든가 재허가의 문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와 합의과정이 있었고, 협의를 통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 진행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고, 더구나 국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앞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강규형 前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을 때, 특히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아마 엄청나게 총공세를 할 것이고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치권의 몫으로 남겨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사과를 해야 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충분히 위원 4명의 의견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돈하셔서 회의를, 또 저희가 이후에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번지는 것은 우리가 운용의 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상임위원회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 또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논의구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행정기관에서의 처분이 추후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배척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처분을 가지고 사과해야 한다면 행정기구로서 앞으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고, 5기 이후 6기, 7기 방통위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을 내린 MBN 사건들도 또 다시 사과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행정기구의 처분은 사법부에 가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행정기구가 사과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이것을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추가적인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이 문제는 지금이 아니어도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자기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사에 관한 문제이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결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행정청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인 논의라면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부터 이야기하시고 논의는 나중에 다시 하시지요. 이것이 성안되더라도 오늘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고, 사안에 대한 의견은 말씀하셨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우리 위원회가 뭔가를 한다면...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 제4장(위원회의 운영) 3번에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와 상의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의안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그것이 합법적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저도 의안 하나를 제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태섭 이사의 징계,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의안을 상정하자고 했으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정도로….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와 말씀하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2008년도 7월 18일에 별도 해임안건 상정 없이 보궐이사를 추천했거나 아니면 해임했던 건도 같이 다루는 것을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구체적인 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고, 오늘 회의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이 어떤 비리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또 사면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방통위의 후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안건에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안건과 이 안건은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급적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중재의견을 냈는데 의안까지 상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형환 위원님께서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고의 사건으로 규정했는데 최고의 사건은 더 많이 있다, 안형환 위원님께서서는 강규형 前 이사의 해임처분이 방통위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으로 규정하셨는데,

○ 안형환 상임위원

- '가운데 하나였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어쨌든 저는 제일 나쁜 것으로 들었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를 건너뛰고 오늘 공개적인 회의에서 소위 인사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일 중에 가급적 저희는 5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통위의 향후 과제를 가지고 논의해 왔고 협의·합의가 안 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존중해 온 방식이 있습니다. 관례라는 것이 있는데 관례가 또 다시 깨지면서 이 논의가 논쟁으로 번지는 것 때문에 안전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했고, 사무처 안전 중 최시중 위원장 건도 이야기했고 저도 신태섭 이사 건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이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태섭 이사의 해임 때문에 이분이 그 이후 공직에 있을 때 야당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국감에 가보면 지난해든 올해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D급을 받았다고 해서 신태섭 이사장이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의 일부분이 현재 한상혁 위원장이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도 모욕을 당했고 신태섭 이사장이 당했던 점이 5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면 관련 안전을 내시고 토론해 보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과연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살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3분 폐회 】